

서울特別市麻浦區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1992. 7. 20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1992년 7월 2일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1992년 7월 6일

다. 상정일자:第10回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92.7.14)上程議決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財務課長 이영국)

가. 提案理由

麻浦區所有 物品의 效率의이고 걱정한
관리로 區財政의 건전하고 能率的인 運
轉을 도모하기 爲함.

나. 主要骨子

○物品管理官과 分任物品管理官으로 二元化
되어 있는 管理體系를 物品管理官으로
一元化

○超過物品의 發生防止를 爲하여 官署當經
費에 의한 物品買入은 消耗品만 購入하
도록 함.

○重要物品의 範圍를 定數物品으로 통일

○不用品 매각시 예정가격을 決定하기 위
한 鑑定評價 대상범위와 절차를 규정

3. 專門委員檢討報告의 要指(專門委員:김현기)

본 改正案의 주된 內容은 物品管理 公務員의 一元化, 超過物品의 發生防止를 爲
한 비소모품 購入의 통계, 不用品의 所要
照會와 不用決定 및 賣却方法의 具體化
등으로써, 物品取得, 保管, 사용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規定하여 效率的으로
적정한 管理를 도모하기 爲해 적절한 改
정조치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없음

5. 討論要指:없음

6. 審査結果:原案可決

7. 少數意見의 要指:없음

8. 기타:없음

서울特別市麻浦區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提出年月日:1992年7月2日

提出者:麻浦區廳長

1. 改正理由

서울特別市 麻浦區 所有 物品의 效率的
이고 適正한 管理로 區財政의 健全하고
能率的인 運營을 圖謀하기 爲하여 超過物
品의 發生防止對策 및 重要物品의 範圍
등을 內務部長官이 정한 基準에 맞도록
改正하고자 함.

2. 主要骨子

○物品管理官과 分任物品管理官으로 二元化
되어 있는 管理職體系를 物品管理官으로
一元化함(案 第2條 및 第3條)

○超過物品의 發生防止를 爲하여 官署當經
費에 의한 物品買入은 非消耗品購入을
금하고 消耗品만 購入하도록함(案 第9
條)

○重要物品의 範圍를 定數物品으로 統一함
(案 第10條의2)

○不用品 賣却時 豫定價格을 決定하기 위
한 鑑定評價對象範圍와 節次를 規定함
(案 第15條, 第16條)

3. 參考事項

○關係法令(별첨)

地方財政法 第94조, 第95條 및 同法施
行令 第112條, 第113條, 第130條第1項

○豫算:필요없음

○其他:新·舊條文 對比表 別添

서울特別市麻浦區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麻浦區物品管理條例中 다음과 같
이 改正한다.

第2條 第2項중 “(分任物品管理官을 포함하
다)”를 削除한다.

第3條第1項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物品管理官은 物品의 管理·請求·檢數·
返還·修理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事務를
處理한다.

第9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9條(官署當經費에 의한 物品買入) ①官署
當經費에 의한 物品의 買入은 消耗品에
한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物品을 買入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規則이 정하는 物品買
入(수리·제조)要求書에 의하여 物品출납원
의 確認을 거쳐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따라 物品을 買入하였을 때에는 分任物品출납원은 당해 物品買入에 대한 物품명·物품분류번호·수량·규격·매입가격 등 필요한 事項을 즉시 物品출납원에 通報하여야 하며 物품출납원은 매월 物品의 買入事項을 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등재 하여야 한다.

第10條 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物品의 기부 또는 贈與의 申告를 받은 주관부서의 物품출납원(分任物品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본임物품출납원)은 物品管理官에게 規程이 정하는 書式에 의거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物品管理官은 구청장에게 報告하여 그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第10條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第10條의2(중요物품의 범위) 地方財政法施行令 第1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重要物品은 定數物品으로 한다.

第15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5條(不用品の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物品管理官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物品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畜産物 기타 生産物을 賣却하는 때에는 規程이 정하는 不用決定通報書에 의거 區廳長의 決裁를 받아 不用의 決定을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物品으로서 앞으로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物품
3. 원장비가 使用不可能 狀態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可能性이 없는 경우의 그 附屬品
4. 規格 또는 그 模型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物품
5. 施設物에서 제거된 物品으로서 活用할 수 없는 物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使用할 수 없는 物品
7. 수선을 요하는 物品으로서 수선함이 非經濟的인 物品
8. 第1號 내지 第7號에 준하는 事由가 있다고 인정하는 物品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不用品の 소요조회중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物品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物品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物品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物品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使用할 수 없는 物品
4. 수선을 요하는 物品으로서 수선함이 非經濟的인 物品
5. 기타 내구년수가 초과된 物品으로 再活用이 非經濟的인 物品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不用品の 소요조회는 서울特別市와 그 소속사업소, 서울特別市 管轄區域안에 있는 자치구, 중앙행정기관, 직할시·도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物品取得 價格(장부가가격기준)이 1천만원미만의 物品에 대하여는 서울特別市와 그 所屬事業所 및 서울特別市 管轄구역안에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 행한다.

第16條第4項 단서중 “第3項 각호의 規程에 따른 총량의 가격총액이 5백만원 이상인 物품에”를 “物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이상인 物품으로서 再活用이 가능한 物品에”로 하고 동조에 第7項, 第8項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경리관은 物品賣却의 경우에 있어서 買受人이 즉시 代金을 納付하고, 그 物品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物品賣却契約書 作成을 생략할 수 있다.

⑧不用品の 賣却處分은 년2회(4월,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 할 수 있다.

第19條 第2項을 삭제한다.

第23條 第1項中 第4號를 削除하고 동항第5號를 第4號로, 第6號를 第5號로, 第7號를 第6號로 한다.

第23條第2項中 “비치정리하여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하며 제10조의 2의 規程에 의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로 하며,

同條 第4項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의 內容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電算入力處理簿로 장부비치에 갈음한다.

第27條第2項中 “物品출납원이 規則이 정하는 物品검수조서에 의거 행하고”를 “物品출납원(分任物品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分任物品출납원)이 행하고”로 하고, 동조 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施設工事に 使用하기 위하여 行政機關에서 供給하는 建設資材에 대하여는 工事監

督 公務員이 檢査하고 分任物品출납원이 검수한다.

第31條第2項을 削除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條例는 공포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경과조치)이 條例 시행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된 事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新·舊條文 對比表

현 행	개 정 (안)
<p>第2條(관리책임) ①생략</p> <p>②구정장은 物品管理公務員(이하 物品管理官(分任物品管理官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用途에 따라 그 所管에 속하는 物品管理責任公務員(이하 物品출납원(분임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p> <p>③(생략)</p>	<p>第2條(관리책임) ①(현행과 같음)</p> <p>②.....(.....).....(.....).....</p> <p>③(현행과 같음)</p>
<p>第3條 (物品管理官등의 職務) ①物品管理官은 物品의 管理·請求·儉數·返還·修理 기타 出納保管에 관한 事務를 處理하고, 分任物品管理官은 物品管理官의 指揮 監督을 받아 所管 物品의 管理등에 관한 事務를 處理한다.</p> <p>②(생략)</p>	<p>第3條(物品管理官등의 職務) ①物品管理官은 物品의 管理·請求·儉數·返還·修理 기타 出納保管에 관한 事務를 處理한다.</p> <p>②(現行과 같음)</p>
<p>第9條(官署當經費에 의한 物品買入)</p> <p>分任物品출납원이 官署當經費에 의하여 物品을 買入하였을때에는 買入物品에 대한 物품명·物품분류번호·收量·規格·買入價格 등 필요한 事項을 지체없이 物品管理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p>	<p>第9條(官署當經費에 의한 物品買入)</p> <p>①官署當經費에 의한 物品의 買入은 消耗品에 한 한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物品을 買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物品買入(수리·제조) 요구서에 의하여 物品출납원의 確認을 거쳐야 한다.</p>

현행	개정 (안)
<p>第10條(기증품의 取得) ①물품의 寄附 또는 贈與의 申告를 받은 主管課長은 物品管理官에게 規則이 정하는 기증품조서를 작성 송부하고 物品管理官은 所屬機關長에게 提出하여 수령여부를 決定하여야 한다.</p>	<p>③第2項의 規定에 따라 物品을 買入하였을 때에는 分任物品출납원은 당해 物品買入에 대한 物품명·物品分類番號·收量·規格·買入價格 등 필요한 事項을 즉시 物品출납원에게 通報하여야 하며, 物품출납원은 매월 物품의 買入事項을 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p> <p>第10條(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申告를 받은 主管部署의 物품출납원(분임物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物품출납원)은 物品管理官에게 規則이 정하는 書式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物品管理官은 구청장에게 報告하여 그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②(생략)</p> <p>(신 설)</p>	<p>②(現行과 같음)</p> <p>第10條의2(重要物品의 範圍) 地方財政法施行令 第1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重要物品은 定數物品으로 한다.</p>
<p>第15條(不用의 決定) 物品管理官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物品을 다른 物品管理部署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을 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 生産物을 賣却할 때에는 規則이 정하는 不用決定通報書에 依據 구청장 決裁를 받아 不用 決定을 하여야 한다. 다만, 物品의 성질상 緊急處分을 요하는 物品과 소요기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物品 및 활용 불가능한 物品에 대하여 소요조회 생략할 수 있다.</p>	<p>第15條 (不用品의 소요조회와 不用決定)</p> <p>①物品管理官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物品에 대하여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에 소요조회를 한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 生産物을 賣却하는 때에는 規則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구청장의 決裁를 받아 不用의 決定을 하여야 한다.</p>

현행

1. 使用할 필요가 없게된 物品으로서 앞으로 使用할 展望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不可能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可能性이 없는 경우의 附屬品
4. 規格 또는 그 模型이 달라져 修理하여도 원래의 目的에 使用할 수 없는 物品
5. 시설물에서 제거된 物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目的에 使用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物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物품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物품

(신 설)

(신 설)

개정 (안)

1-8호(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規定에 의한 不用品의 소모 조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物품에 대하여는 소모조회를 省略할 수 있다.

1. 物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物품
2. 規格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目的에 使用할 수 없는 物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目的에 使用할 수 없는 物품
4. 수선을 요하는 物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物품
5. 기타 내구년수가 초과된 物품으로 재 활용이 비경제적인 物품

③ 제1항의 規定에 의한 불용품의 소모 조회는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 事業소, 서울특별시 管轄구역안에 있는 자치구, 중앙행정기관, 직할시·도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物품취득가격(장부가액기준)이 1천만원 미만의 物품에 대하여는 事業소 및 서울特別市 管轄區域안에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 행한다.

현 행

第16條(不用品の 賣却)

①-③(생략)

④不用品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賣却價格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規定에 따른 총량의 價格總額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鑑定評價에 관한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政府로부터 認可를 받은 감정기관(감정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地域에 있어서는 당해지역에 있는 金融機關, 農業協同組合, 水産業協同組合에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포함 한다)의 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⑥(생략)

(신 설)

(신 설)

第19條(保管責任)①(생략)

②第1項의 전용품에 대하여는 物品출납원이 전용자로부터 規則이 정하는 공차증을 받아야 한다.

第23條(물품출납원의 장부) ①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書式에 依據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중요물품 이력카드
4. 물품카드 등록부
5. 소모품 대장
6. 도서대장

개 정 (안)

第16條(不用品の 賣却)

①-③(현행과 같음)

④.....
.....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이상인 物品으로서, 再活用이 가능한 物品에.....
.....
.....
.....
.....

⑤-⑥(현행과 같음)

⑦경리관은 物品賣却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物品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物品賣却契約書 作成을 省略할 수 있다.

⑧不用品の 賣却處分은 년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賣却處分할 수 있다.

第19조(보관책임) ①(현행과 같음)

②(삭 제)

第23條(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

.....

1-2(현행과 같음)

3. 물품카드 등록부
4. 소모품 대장
5. 도서대장

현 행

②분임물품출납원은 각각 제1항의 장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③(생략)

第27條(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생략)

②물품의 매입·수리·수선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이 규칙이 정하는 물품검수조서에 의거 행하고 재무과 관계 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입회의 생략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입회가 성질상 허용되지 않을 경우는 검사부서의 공무원을 입회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第31條(인계의 절차) ①(생략)

②인계자는 규칙이 정하는 장부목록3통과 물품재고 내역을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수수한 현 재고내역 및 목록에 수수년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날인 한후 각1통씩 보존하고 1통은 규칙이 정하는 방식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에 첨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정 (안)

②.....
비치하여야 하며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물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문인을 찍어야 한다.

③(현행과 같음)

④第1項 規定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처리부로 장부비치에 같음한다.

第27條(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현행과 같음)

②.....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규칙이 정하는 물품검수조서에 의거 행하고.....

③시설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공급하는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 公務員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第31條(인계의 절차) ①(현행과 같음)

②(삭제)